

[정 정 대 비 표]

■ 정정 집합투자기구 및 정정 서류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편 드 명 | BNK든든한TDF2030증권투자신탁(혼합-재간접형) |
| 정 정 서 류 | (간이)투자설명서 |
| 정 정 사 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조정 -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- 증권대차거래 및 거래비용 등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- 일반사무관리회사 사명 및 사옥 변경 |
| 효 력 발 생 일 | 2024년 01월 31일 |

■ 정정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| 항목 | 정정사유 | 정정 전 | 정정 후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|--|
| [요약정보] | | | |
| 투자비용 |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| - | - 최근 결산일 또는 2024.01.04 기준으로 업데이트 |
| 투자실적 추이(연평균수익률) |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| - | - 최근 결산일 또는 2024.01.04 기준으로 업데이트 |
| 운용전문인력 | - | - | - 2024.01.04 기준으로 업데이트 |
| 과세 |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<문구 추가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<문구 추가></p> | <p>- <u>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: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,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(연금수령시),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(연금외수령시)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, 관련 사항은 "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"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/u></p> <p>- <u>퇴직연금제도의 세제: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.</u></p> |

[투자설명서]

| 항목 | 정정사유 | 정정 전 | 정정 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[요약정보] | | | |
| 투자비용 |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| - | - 최근 결산일 또는 2024.01.04 기준으로 업데이트 |
| 투자실적 추이(연평균수익률) |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| - | - 최근 결산일 또는 2024.01.04 기준으로 업데이트 |
| 운용전문인력 | - | - | - 2024.01.04 기준으로 업데이트 |
| 과세 |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| - <문구 추가> - <문구 추가> | -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: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,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(연금수령시),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(연금외수령시)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, 관련 사항은 "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"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- 퇴직연금제도의 세제: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. |
| 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| | | |
| 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| - | - | - 2024.01.31: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,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조정,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, 증권대차거래 및 거래비용 등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, 일반사무관리회사 사명 및 사옥 변경 |
|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| - | - | - 2024.01.04 기준으로 업데이트 |
|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|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, 오기 정정 | 가. 투자 대상 ① ~ ② (생략) ③ 채권: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 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- 이상이 | 가. 투자 대상 ① ~ ② (현행과 동일) ③ 채권: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 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- 이상이 |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|---|
| | | <p>어야 하며, 사모사채권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.), 「<u>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</u>」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 등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- 이상인 것)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(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의 경우 신용평가등급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) (이하 “채권”이라 한다)</p> <p>④ ~ ⑧ (생략) ⑨ 증권의 대여 <u><주석 추가></u></p> <p>⑩ 증권의 차입 <u><주석 추가></u></p> <p>⑪ (생략) 주1) 투자비율은 투자신탁재산 자산 총액에 대비하여 산출 1. ~ 2. (생략) 3.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(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) 4. ~ 5. (생략) 나. (생략)</p> | <p>어야 하며, 사모사채권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.), <u>전자증권법</u>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 등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- 이상인 것)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(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의 경우 신용평가등급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) (이하 “채권”이라 한다)</p> <p>④ ~ ⑧ (현행과 동일) ⑨ 증권의 대여 주2) <u>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각 목과 같은 목적을 위해 증권 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</u> 1. <u>수익률 증진: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,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</u> 2. <u>기타 효율적, 안정적 운용</u> ⑩ 증권의 차입 주3) <u>효율적 운용,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, 환매 대응, 유동성 확대,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</u> ⑪ (현행과 동일) 주1) 투자비율은 투자신탁재산 자산 총액에 대비하여 산출 1. ~ 2. (현행과 동일) 3.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(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) 4. ~ 5. (현행과 동일) 나. (현행과 동일)</p> |
| 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|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| - | 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(1) 주요 투자전략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|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-|
| | | | - 펀드규모 및 투자비중 업데이트 투자대상국가의 현황 - 투자대상국가 업데이트 |
|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|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,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조정 | 가. ~ 나. (생략) 다. 기타 투자위험 - 투자신탁 해지위험: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,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<u>1년</u> 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<u>1년</u> 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 - <위험 추가> 라. (생략) | 가. ~ 나. (현행과 동일) 다. 기타 투자위험 - 투자신탁 해지위험: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,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<u>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)</u> 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<u>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)</u> 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 - 증권대차거래 위험: 증권대차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,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라. (현행과 동일) |
|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|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| 1) ~ 2) (생략) 가. (생략)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- | 1) ~ 2) (현행과 동일) 가. (현행과 동일)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-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|
| 14.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| 문구 조정,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| 가. 이익배분 -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. (이하 생략) 나. 과세 투자소득에 --- (생략) --- 나누어집니다. | 가. 이익배분 -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<u>당해 종류 수익증권</u> 기준 가격으로 당해 <u>종류</u>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. (이하 현행과 동일) 나. 과세 투자소득에 --- (생략) --- 나누어집니다. |

| | | |
|--|--|--|
| | <p>(1) ~ (3) (생략)</p> <p>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: Class C-P, C-Pe, S-P, J-Pe 가입자 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 - 수령요건: 55세 이후 <u>10년간</u>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(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)</p> <p>- 세액공제: [납입금액] -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 ① <u>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</u> 이내. 단, 2022년 12월 31일까지 「소득세법」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납입액 600만원 이내 ② <u>상기①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</u> 이내 ③ (생략) [세액공제] 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<u>4천만원</u>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</p> <p>-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: 천재지변 / 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,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/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(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)의 질병·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 요양 /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영업 인·허가 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/ <신설></p> | <p>(1) ~ (3) (현행과 동일)</p> <p>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: Class C-P, C-Pe, S-P, J-Pe 가입자 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 - 수령요건: 55세 이후 <삭제>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(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)</p> <p>- 세액공제: [납입금액] -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 ① <u>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</u> 이내. <삭제></p> <p><삭제></p> <p>② (현행과 동일) [세액공제] 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<u>4천 500만원</u>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</p> <p>-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: 천재지변 / 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,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/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(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)의 질병·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 요양 /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영업 인·허가 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/ 연금계좌 가입자가 「재난 및 안전관</p> |
|--|--|--|

| | | | |
|--|-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| | <p>(5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: Class C-P2, C-P2e, S-P2, J-P2e, C-O 가입자</p> <p>- 세액공제:</p> <p>-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<u>400만원</u> 이내의 금액)과 연 <u>700만원</u>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, <u>2022년 12월 31일까지 「소득세법」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되,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.</u></p> <p>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<u>4천만원</u>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</p> <p>※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(원천징수세액의 10%)를 포함한 세율입니다.</p> | <p><u>리 기본법」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</u> <u>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</u> <u>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</u></p> <p>(5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: Class C-P2, C-P2e, S-P2, J-P2e, C-O 가입자</p> <p>- 세액공제:</p> <p>-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<u>600만원</u> 이내의 금액)과 연 <u>900만원</u>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. <삭제></p> <p>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<u>4천 500만원</u>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</p> <p>※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(원천징수세액의 10%)를 포함한 세율입니다.</p> |
| 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| | | |
| - | 최근 결산기 재무 제표 확정 | - | - 최근 결산일 또는 2024.01.04 기준으로 업데이트 |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--|
| 1. 재무정보 |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| 가. 요약재무정보 - <항목 추가> | 가. 요약재무정보 - <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>, <주식의 매매회전율> |
| 제4부.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| | | |
|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| 이해관계인 변경 | - 가. 회사개요 - 이해관계인: <u>한국증권금융(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30% 이상을 보관·관리하고 있는 신탁업자)</u> | - 2024.01.04 기준으로 업데이트 가. 회사개요 - 이해관계인: <u>신한은행(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30% 이상을 보관·관리하고 있는 신탁업자)</u> |
| 3.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|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, 일반사무관리회사 사명 및 사옥 변경 | 가. 신탁회사(신탁업자) (1) (생략) (2) 주요업무 1) (생략) 2)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[의무] ① ~ ② (생략)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‣ 투자설명서가 법령·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/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/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 /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/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/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등 (이하 생략) 나. 일반사무관리회사 (1) 회사의 개요 - 회사명: <u>신한아이타스 주식회사</u> - 주소 및 연락처: 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신한금융투자타워 16, 22층 ☎ 02-2180-0400</u> - 회사연혁 등(홈페이지 참조): www.shinhanaitas.com (2) (생략) 다. ~ 라. (생략) | 가. 신탁회사(신탁업자) (1) (현행과 동일) (2) 주요업무 1) (현행과 동일) 2)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[의무] ① ~ ② (현행과 동일)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‣ 투자설명서가 법령·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/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/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 /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/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/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/ <u>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·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</u> (이하 현행과 동일) 나. 일반사무관리회사 (1) 회사의 개요 - 회사명: <u>신한펀드파트너스 주식회사</u> - 주소 및 연락처: <u>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☎ 02-2168-0400</u> - 회사연혁 등(홈페이지 참조): www.shinhanfundpartners.com (2) (현행과 동일) 다. ~ 라. (현행과 동일) |
| 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| | | |
| 2. 집합투자기구의 | 자본시장법 시행 | - 의무해지 | - 의무해지 |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<p>해지에 관한 사항</p> | <p>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조정</p> | <p>집합투자업자는 ---(생략)--- 합니다.</p> <p>▶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/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/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/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/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(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<u>대통령령으로</u> 정하는 경우는 제외)</p> <p>- 임의해지</p> <p>집합투자업자는 ---(생략)--- 합니다.</p> <p>▶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/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/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/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p> <p>(이하 생략)</p> | <p>집합투자업자는 ---(생략)--- 합니다.</p> <p>▶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/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/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/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/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(다만, <u>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</u>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<u>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</u> 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)</p> <p>- 임의해지</p> <p>집합투자업자는 ---(생략)--- 합니다.</p> <p>▶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/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/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(<u>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</u>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/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(<u>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</u>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p> <p>(이하 현행과 동일)</p> |
| <p>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</p> | <p>문구 조정</p> | <p>가. (생략)</p> <p>나. 수시공시</p> <p>(1) (생략)</p> <p>(2) 수시 공시</p> <p>집합투자업자는 ---(생략)--- 합니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8.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(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)</p> <p>9.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</p> | <p>가. (현행과 동일)</p> <p>나. 수시공시</p> <p>(1) (현행과 동일)</p> <p>(2) 수시 공시</p> <p>집합투자업자는 ---(생략)--- 합니다.</p> <p>1. ~ 7. (현행과 동일)</p> <p>8.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(<u>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</u>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(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)</p> <p>9.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(<u>법 시</u></p> |

| | | | |
|--|--|---|---|
| | | <p>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(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)</p> <p>10. (생략) (3) ~ (4) (생략)</p> | <p><u>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</u>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(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)</p> <p>10. (현행과 동일) (3) ~ (4) (현행과 동일)</p> |
|--|--|---|---|

<끝>.